2024년 05월 09일 14시 10분

공개대상 정보의 범위

정보란?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(전자문서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이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

「정보공개 청구 대상」이 아닌 사례

-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
-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
- 관보, 신문,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

정보의 공개방법

공개란?

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

공개방법

- 문서, 도면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등 : 시청, 열람 또는 교부, 복제물의 교부
- 전자적 형태로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 등 :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 · 시청 또는 사본 · 출력물의 교부

비공개 대상 정보

1. (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)
2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3. 국가안전보장 · 국방 · 통일 ·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
4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5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6. 감사 · 감독 · 검사 · 시험 · 규제 · 입찰계약 · 기술개발 · 인사관리 ·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·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7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8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·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9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·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정보공개 청구권자

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(법 제5조)

- 모든 국민 :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
- 법 인 : 사단 · 재단법인, 정부투자기관, 정부출연기관 등,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  *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음
- 외국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대상기관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(법 제2조)

사전정보 공표제도

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기 ·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(법 제7조)

공표대상 정보

-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- 시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- 주 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,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
- 업무추진비 집행내역
- 시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· 통계자료 등의 정보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

정보공개신청 : 정보공개포털(http://www.open.go.kr) 바로가기(대국민창구)

공개업무처리 : 정보공개포털(http://admin.open.go.kr) 바로가기 (공무원창구)

불복구제절차

불복사유

-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
-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
- 정 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
-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

처리절차

- 이의신청 : 처분청에 신청 ⇒ 처분청의 재결
  ※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내 제기, 처리기간은 7일이내
- 행정심판 :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⇒ 재결청의 재결
  ※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, 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
- 행정소송 : 관할행정법원에 소의제기 ⇒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
  ※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

불복제기절차

- '이의신청', '행정심판', '행정소송 제기'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
  - 행정심판 ⇒ 행정소송
  - 이의신청 ⇒ 행정소송
  - 이의신청 ⇒ 행정심판 ⇒ 행정소송
    ※ 이의신청,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('98. 3월부터)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